

5.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2011. 05. 02

제1조(목적)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별정직, 교육전문직의 자체표창과 정부표창 추천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의거 본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2인, 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과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학생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 (심사요구) 교원 공적심사는 교무처장이, 직원 공적심사는 사무처장이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 및 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공적상 심사기준)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년간 꾸준히 노력한 직무 실적을 중시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자로 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평소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직무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2. 본교 재직 중 본 대학 발전에 공헌도가 큰 자

3. 평소 공적, 사적생활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최근 5년 이내에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 계류 중인 자

2.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갖추지 못한 자
3. 재직 중 직무에 불성실하였거나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원성을 사는 자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제7조 (심사방법) ①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공적사실과 증빙자료의 진위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청된 후보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공적이 가장 뛰어난 수상후보자를 심사 결정한다.

제8조 (수상인원) 수상 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인원을 결정하되, 외부기관에서 정한 인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수상후보자의 추천)

- ① 수상후보자는 총장이 추천한다.
-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1호 서식) 1부
 2. 교직원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3. 기타 공적증빙자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